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758호
2.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
3. 발의일자 : 2021. 10. 12.
4. 회부일자 : 2021. 10. 20.

II. 제안이유

- 우리 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 조례의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개정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김인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758호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한자로 되어 있는 일부 조문을 한글화하고,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 및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게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고치며,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 표현을 정리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는 입법 의도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표-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9판), 국민 의견조사¹⁾

구분	비율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매우 많다.	30.4%
어려움을 겪은 적이 조금 있다.	52.1%
어려움을 겪은 적이 별로 없다.	15.1%
어려움을 겪은 적이 전혀 없다.	2.4%

1) 법제처 홈페이지(moleg.go.kr) : 정비기준 및 자료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 p.8 용어정비의 중요성)

[표-2] 2021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설문 순위²⁾

순위	행정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용어	용어	용어
1	개호 → 간병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상병급여 → 부상 및 질병급여
2	고아원 → 보육원	명기 → 명확히 기록	풍치 → 경관
3	애로사항 → 고충사항	저리 → 저금리	구제 → 제거
4	절취선 → 자르는 선	지불 → 지급	장의비 → 장례비
5	전주 → 전봇대	잔고 → 잔액	추월 → 알지르기

- 동 조례안은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3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당해”, “기타의”, “명기하여야”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각 “해당”, “그 밖의”,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등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용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 정비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 제8조에 대한 검토

2) 법제처 홈페이지(moleg.go.kr) : 공지사항(공고 제2021-95호)

○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여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 안 제8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1.9.30. 일부개정)로 개정되어 제6조제2항제4호의 해당 내용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미 정비가 되어있어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 제13조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3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사항이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739, 2021.10.15.).

○ 그러나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이 아직 위원회 심의 전으로, 심의 결과 동 조례안이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통과될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이 다른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두 개정조례안 간의 조문이 서로 상충하고 있지 않아 조례 정비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

꺁정비 조레안」 에 대한 검토포고를 마치겔습니다.

[붙임] 법제처(2020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3)

1. 일본식 용어 정비 목록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가도	임시도로	구좌	계좌	시말서	경위서
가료	치료	납골당	봉안당	엽연초	잎담배
가식	임시식재	녹비	푯거름	일부인	날짜도장
갑상선	갑상샘	미강	쌀겨	주말하다	붉은 선으로 지우다
거래선	거래처	미불	미지급	지득하다	알게 되다
건정	잠금장치	부락	마을	지참	지각
계기하다	규정하다	불입	납입	침묵	반침묵
견습	수습	불하	매각	품신	건의
계리	회계처리	서리	자갈	하구연	하굿둑
곤색	감색	사찰	조사	행선지	목적지
구배	경사	시건	잠금		

2. 일본어 투 표현의 목록과 정비안

일본어 투 표현	정비안
관하여	~에 관하여, 문맥에 따라 ‘관하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하여	에게, 로 하여금, 대하여, 는, 를
명사 나열형	조사나 보조사를 추가한다. 명사를 형용사나 동사로 바꾼다.
에	과, 로, 를, 보다, 에게, 에서
요하는, 필요로 하는	~이 필요한
으로써	여, 여서, 으로서
의	이, 가, 을, 를, 은, 생략하는 경우
있어, 있어서	에서, 경우, 할 때, 하여, ~는 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하지 아니하는 한	경우 외에는, 경우가 아니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한하여	~에서만, ~에 한정하여, ~으로만, ~에만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2회에 한하여	두 차례만, 두 번까지만, 두 차례에 한정하여, 두 번만
~에 한하다	~에 한정하다, ~로 한정하다, ~만 해당하다, ~만을 말한다, ~만(을) 할 수 있다.

3) 법제처 홈페이지(moleg.go.kr) : 정비기준 및 자료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 p.30 일본식 용어 정비 목록)